

30.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9.부터 1991. 6. 30.까지는 연 19%, 1991. 7. 1.부터 1992. 9. 30.까지는 연 15%, 2012. 10. 1.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18%,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카드 회원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2040 판결)

☐ 카드사용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5,12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신용카드회원가입자의 대금지급 책임유무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드를 맡겨 두었다가 은행으로부터 을이 사용한 카드사용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회수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갑은 을의 위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을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을의 위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의무를 진다.

② 위의 경우 은행이나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카드 거래제도의 취지나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미루어 카드발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는 것도 필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은행이나 가맹점이 부정거래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카드회원인 본인이 타인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 여기에까지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590원 및 위 돈 중 2,457,000원에 대하여 20〇〇.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적용되기 위한 요건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자에게 그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을 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

[참조판례] 신용카드회사의 회원모집 시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책임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 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2261 판결)

❖ 위조대출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12. 1.부터 20〇〇. 8.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에게 카드대

출을 한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의 행위에 카드가맹점이 적극 가담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인 카드대출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의 편취를 가능하게 하였다면, 그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서울지법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 ; 확정)